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연월일 : 2018. 10. .
제 안 자 : 김기석 위원 외 1인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로 명칭 개정(안 제2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규정을 개정(안 제5조)

다. 감사 및 조사 요구 방법에서 민법 제111조제1항 도달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개정(안 제8조)

라. 상위법에 반하는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조문을 상위법에 맞는 조문으로 개정 (안 제12조, 안 제14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말로 쓰기 및 띄어쓰기 등 용어·문장 정비

3. 예산조치 : 필요없음

4. 입법예고 : 필요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6. 개정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업무를 위한"을 "업무에"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의회"를 "본회의"로, "한정한다"를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구의"를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본회의 의결로"를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를 "제1항에 따른 감사"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그"로, "상호협의 하여야"를 "상호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관계기관 또는 관계되는 자는 법규”를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로, “감사나 조사활동”을 “위원회의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태료”를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을 “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아니 하였거”를 “아니하였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 없이”를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회의규칙”을 “회의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 징수의 예”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② (생 략)	제2조(감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며,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 의회운영위원회---------- ----------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조(사무보조) ① (생 략)	제4조(사무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사무보조 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 업무에 ----- ---------- ----------.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 다만, 의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 ---------- ---------- ---------- --. ---- 본회의---------- ---------- 한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 ----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다.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감사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그 -- 상호 협의하여야 --.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요구는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되는 자는 법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나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 위원회의 활동---------- ---------- ---------- ---------- ----------.
③ 제1항 및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③ ---------- ---------- ---------- ---------- ---------- ----------

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제9조(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1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제9조(고발의 절차) ① ---- 법 제41조제5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제13조(부과·징수 등) ①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의장의 통보서에는 적법하게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를 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출석을 아니하였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부과·징수 등) ① ------- ----------. ---------- ---------- 아니하였거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제14조(이의신청) ①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60일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지방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
제19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6조의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
제20조(준용규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준용규정) ① ---------- 회의 규칙--------.
②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 계 법 령]

지 방 자 치 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